인 천 광 역 시
인 권 보 호 관 회 의
결 정

사 건 명 : 와상 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24신청-09)
신 청 인 : 이[redacted]
피 해 자 : 인천광역시 거주 와상 장애인
피신청기관 : 인천광역시

주 문

인천광역시장에게, 와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1.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및 시행되기 전까지 사설 구급차 이송서비스를 지원 할 것
3. 와상 장애인이 병원 진료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4.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

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중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는 와상 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개선하여 줄 것을 2024. 7. 19. 인천광역시 인권부서에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와상 장애인은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이하, 택시)를 이용하려면 탑승을 거부당

하여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세워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택시 요금의 약 100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와상 장애인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탑승을 거부당하는 이유는 법령의 미비로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표1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와상 장애인은 택시 이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인권진흥원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법령 정비할 것을 법제처에 국민제안을 했고 헌재의 판결로 법령은 정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법령이 정비되어도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신속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와상 장애인이 택시를 안전하게 누워서 탑승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술과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나. 피신청기관

인천광역시 인구는 2024년 7월말 기준 3,012,99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인 152,604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 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표준휠체어로 한정되어 있어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없다. 와상 장애인은 이동시 현재 사설구급차만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구급차 이용 지원은 가능하다.

시는 국토교통부 제2차 광역교통복지협의회 회의('24.8.1.)에서 와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탑승을 위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와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행을 위하여 법정기준대수 의무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도부터 인천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운영중이며, 센터에서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사업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 홍보 캠페인 및 등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응급상황 외에도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사설)구급차 운영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3.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천광역시 장애인등록 현황

2024년 7월말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는 3,012,997명(외국인 미포함)이며, 장애등록 인구는 152,604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를 차지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0,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척추에 장애가 있는 인원은 42,671명이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전체 11,501명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은 600여명으로 추정된다(인천 거주 장애인이 전국 등록 장애인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나.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646,922명의 88.5%는 치료·재활·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이며 그 주된 이유는 ‘이동의 어려움’(36.5%), ‘경제적 이유’(2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와상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인천광역시 거주 와상 장애인은 침대형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사설 구급차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의 약 30%를 지원받았으나 2024년부터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장애인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이동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때문임을 보여준다.

라. 장애인의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1) 특별교통수단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1] 등을 도입, 운영하도록 규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항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 차량의 종류, 탑승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포함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할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에 표준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와상 장애인은 침대형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없어 사설 구급차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향후「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탑승설비 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때 와상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의2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에 한정한 규정에 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2) 119 구급차

119 구급차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운영되고 있다. 「응급의료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 등”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며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등이다. 119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환자의 이송도 119구급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응급환자가 아닌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서 구급차 이동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일반차량이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장애인건강권법시행령」제4조).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특히 와

상 장애인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소방본부는 2021년 2월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119특별 구급이송서비스”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병원진료, 건강검진 등 비응급 상황에서도 119구급차 이용할 수 있고, 병원 진료 후 귀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이 119구급차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119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사설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한다.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장비사용료, 처치비용, 통행료 등이 포함된 이송 처치료가 발생하여 인천시청에서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이동거리 45km 왕복 이동시 13만원 정도 소요된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10월부터 중증 와상 장애인의 병원 이송 및 진료 후 자택 이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부르미콜센터)가 민간 응급이송업체 3곳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약 2,16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증 와상 장애인으로, 1개월에 최대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및 와상환자이고,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문의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부르미콜센터에 하루 전 오전 11시부터 예약접수를 한 후에 응급이송센터로 연계되며, 차량 운행은 3개 기관이 순번제로 배정된다. 운행 지역은 울산 전 지역은 지원가능하며, 탑승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은 1회 편도 이용 시 4,500원이고, 나머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2023년부터 병원 목적 이외의 목적도 이용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024년 현재 55명의 이용자가 등록되어 연평균 4,45회 이용 중이며 연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5. 판단

가. 와상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국제사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파트에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

국가는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UN, 2008).

의료접근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 단체, 학계, 관련 현장전문가 등이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시급성을 꾸준히 촉구함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국내 31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계양구만이 202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개인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이들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헌법재판소 2002헌마52).

입법자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및 시행까지의 기간 동안 와상 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접근권은 계속해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같은 법 제4조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예산책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의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08.

의　　장　　최명섭
인권보호관　　김호일
인권보호관　　유지상
인권보호관　　이용갑
인권보호관　　최길자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가입일 2008.12.11.)

제5조(평등 및 비차별) 3.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유엔「장애인권리협약」해설서』(2007) 제5조(평등 및 비차별) 관련 해설
> -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등'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은 필수적이다.
> -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거의 모든 일상 또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적용되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제공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 차별로 간주되며, 이는 즉각적인 조치 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a)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b)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제25조(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④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헌법불합치, 2019헌마1234, 2023.5.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표 1의3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